

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경환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906호

나. 제 출 자 : 오경환 의원 등 10명

다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3일

라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6일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항목 추가 및 평가 규정 반영 개정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폐지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항목 추가 및 평가 규정 반영 개정(안 제14조)
-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21조)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친환경농어업 육성법’이라 함)로 전부개정되면서 변경된 법규들을 조례의 해당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“친환경농어업 육성법”로의 개정 배경과 관련 내용

-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,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,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(Equivalency) 규정이 없어 통상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.
 - 동등성 규정은 외국의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은 국내 인증을 통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우리나라 유기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- 따라서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·일원화하고자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을 “친환경농어업 육성법”으로 전부개정하였음(12년 6월 개정).

- 변경된 ‘친환경농어업 육성법’은 기존의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상 농업 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에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, 조사행위 거부·방해·기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었음.

<조문대비표>

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	‘친환경농어업 육성법’
<p>제11조(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농경지의 비옥도(肥沃度), 중금속, 농약성분,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.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. 농약·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. 농업의 수자원 함양,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.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<p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·평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농경지의 비옥도(肥沃度), 중금속, 농약성분,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.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. 농약·비료·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. 수자원 함양(涵養),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. <u>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</u> 6.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<p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평가하게 할 수 있다.</p>
<p>제12조(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(試料)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.</p>	<p>제12조(사업장에 대한 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잇닿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(試料)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조사 대상 사업장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</p>

<p>제2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<u>조사행위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</u></p>	<p>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</p> <p><삭제></p>
---	--

- 이처럼 조례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였고,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(국토와 산업, 농업, 환경)에 대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임.

다. 종합의견

- 안 제14조는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, ‘친환경농어업 육성법’에서는 실태조사와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 역시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27조에서는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를 비롯하여 다수의 해석에 따르면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의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법령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음.
- 따라서 조례 제21조의 조사행위의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근거법령인 ‘친환경농어업 육성법’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